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완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37 발의연월일: 2021. 2. 16.

발 의 자: 박완주 · 이형석 · 김민기

오영환 · 서영교 · 임호선

이수진 • 이학영 • 박영순

안호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에서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비축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그 재난관리물품의 취득·보관·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물품관리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감염병·풍수해 등 각종 재난이 실제 발생한 때에는 그 재 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 거나 부족하게 관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, 재난관리자원을 과잉 비축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여 매년 상당한 물량이 불용(不用)처리되 고 있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.

앞으로는 기후변화나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재난이 복잡·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등의 비축·관리에 관한 사항과 「물품관리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른 물품 중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취득·보관·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재난관리물품의 관리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려고 함.

이에 재난자원관리자원에 관하여 별도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해당조문의 정리 등을 하려는 것임(안 제34조 등).

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13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제1항제7호의2 중 "비축과 장비·시설 및 인력의 지정"을 "관리"로 한다.

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4조(재난관리자원의 관리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,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·인적자원(이하 "재난 관리자원"이라 한다)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34조의3제1항제3호 중 "재난경감·상황관리·자원관리·유지관리"를 "재난경감·상황관리·유지관리"로 한다.

제36조제3항제1호 중 "인력·장비 및 물자"를 "재난관리자원"으로 한다. 제37조제1항제5호 중 "구호품"을 "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"으로 한다. 제39조제1항제2호 중 "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·시설 및 인력"을 "재난관리자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장비와 인력"을 "재난관리자원"으로 한다.

제44조제1항 전단 중 "인력·장비·자재"를 "재난관리자원의 지원"으로

한다.

제46조제2항 중 "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응원"을 "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응원"으로 한다.

제51조제2항 전단 중 "장비·물자를 제공"을 "재난관리자원을 지원"으로 한다.

제52조제2항제2호 중 "인력·장비"를 "긴급구조요원·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물자"를 "재난관리자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인력·장비·물자"를 "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"으로 한다.

제52조의2제1호 중 "보유자원관리"를 "재난관리자원의 관리"로 한다. 제55조제1항 중 "인력·장비·시설의 확충"을 "재난관리자원의 확보·확충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"인력·장비 등 자원"을 "재난관리자원 등"으로 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했 개 정 안 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 | 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 ① 재난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 ① ----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 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 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. 1. ~ 7. (생 략) 1. ~ 7. (현행과 같음) 7의2.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 7의2. -----자원의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---- 관리 인력의 지정 8. (생략) 8. (현행과 같음) ② ~ ⑦ (생 략) ② ~ ⑦ (현행과 같음) 제34조(재난관리자원의 비축・관 제34조(재난관리자원의 관리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리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, 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, 물 산 및 인력 등의 물적 · 인적자 자, 자재 및 시설(이하 "재난관 원(이하 "재난관리자원"이라 한 리자원"이라 한다)을 비축・관 다)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 리하여야 한다. 여야 한다. ②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|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재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 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 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

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 할 장비, 시설 및 인력을 지정· 관리할 수 있다.

- ③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 2항에 따른 지정·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「지방공기업 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 방공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1.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정보
- 2. 그 밖에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, 시설 및인력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

비축・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(이하 "자원관리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・운영할수 있다.
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 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 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 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을 관리하여야 한다.
- ⑥ 제2항에 따른 장비, 시설 및 인력의 지정·관리와 자원관리 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한다.

제34조의3(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저제정·운용 등)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재난관리기 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

제34조의3(=	국가재난관리기준의	4
제정・운용	· 등) ①	_
		_
		_
		_
		_

다. 다	₽만,	Γ,	산업	표준	화법	١	제1
2조이	叫叫	른	한국	산업	丑言	주을	적
용할	수	있늯	는 시	-항에	대	하ㅇ	부는
한국	산업	표현	돈을	반영	할	수	있
다.							

- 1. · 2. (생략)
- 3. <u>재난경감·상황관리·자원관</u> <u>리·유지관리</u> 등에 관한 일반 적 기준
- 4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- 제36조(재난사태 선포) ①·② (생 략)
  -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 다.
  - 1. 재난경보의 발령, <u>인력·장비</u> 및 물자의 동원, 위험구역 설정, 대피명령, 응급지원 등 이법에 따른 응급조치
  - 2. ~ 5. (생략)
  - ④ (생 략)

제37조(응급조치) ① 제50조제2항 에 따른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재난경감·상황관리·유지관</u>
린
4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36조(재난사태 선포) ①・②
(현행과 같음)
③
1 <u>재난관리자</u>
<u>원</u>
2. ~ 5. (현행과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
제37조(응급조치) ①

및 시・군・구긴급구조통제단 의 단장(이하 "지역통제단장"이 라 한다)과 시장・군수・구청장 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 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 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(水防)・ 진화・구조 및 구난(救難),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 야 한다. 다만,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.

- 1. ~ 4. (생 략)
- 5. 급수 수단의 확보, 긴급피난 처 및 구호품의 확보
- 6. · 7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39조(동원명령 등) ① 중앙대책 제 본부장과 시장·군수·구청장 (시·군·구대책본부가 운영되 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

<u>.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5
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-
6. · 7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]39조(동원명령 등) ①

한다.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)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<u>재난관리자</u> 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·시설 및 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
- 3. 동원 가능한 <u>장비와 인력</u>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 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 청

# ② (생략)

제44조(응원) ① 시장·군수·구 제 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·군·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그 밖의 민간기관·단체의 장에게 인력·장비·자재 등 필요한 응원(應援)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

·.
1. (현행과 같음)
2
재난관리자
원
<u>u</u>
3 재난관리자원
J. <u>세단한디지현</u>
(-1 -1) -11 A
② (현행과 같음)
]44조(응원) ①
<u>재난관리자</u>
원의 지원

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② (생략)
- 제46조(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응 급조치 등) ① (생 략)
  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 여야 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응원 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1조(긴급구조) ① (생 략)

- ②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 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 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<u>장비·물자</u> 를 제공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 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④ (생 략)

제52조(긴급구조 현장지휘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제46조(시•도지사가 실시하는 응
급조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
시・도지사 및 시장・군수・구
<u>청장에게 응원</u>
제51조(긴급구조) ① (현행과 같
<u>ㅇ</u> )
②
<u>재난관리자</u>
원을 지원
<b>.</b>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52조(긴급구조 현장지휘) ①

#### (생 략)

-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.
- 1. (생략)
-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 원기관의 <u>인력·장비</u>의 배치 와 운용
- 3. ~ 5. (생략)
- 6. 긴급구조에 필요한 <u>물자</u>의관리
- 7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- 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·장비·물자에 대한 운용은 제1항·제3항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(이하 "각급통제단장"이라 한다)의 지휘·통제에 따라야 한다.
- ⑥ ~ ⑪ (생 략)
- 제52조의2(긴급대응협력관) 긴급 제 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

(현행과 같음)
2
1. (현행과 같음)
2
<u>긴급구조요원·긴급</u>
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
<u>원</u>
3. ~ 5. (현행과 같음)
6 <u>재난관리</u>
자원
7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⑤
긴급구조지원요원
및 재난관리자원
⑥ ~ ① (현행과 같음)
52조의2(긴급대응협력관)

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지정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- 1.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 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
- 2. (생략)

제55조(재난대비능력 보강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·장비·시설의 확충, 통신망의 설치·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,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~ ④ (생 략)
- 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분류・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하 여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 료기관 및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 기관등에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 한 <u>인력・장비 등 자원</u>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

1
재난관리자원의 관리
2. (현행과 같음)
제55조(재난대비능력 보강) ①
<u>재난관리</u>
<u> 자원의 확보·확충</u>
· ② (원레기 기수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
<u>재난관리자원 등</u>
<u> </u>
•

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	
이에 따라야 한다.	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